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5.7.3(금) 10:0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#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7명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## 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단 수가 3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문단 수를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,
- 제36조제3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가. 자문단 인원수 삭제(안 제10조)

나.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 반영하여 이를 삭제  
(안 제36조제3항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자문단 인원수를 삭제함은 물론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